

자주 하는 질문

질문: 견습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답변: 가장 먼저 프로그램 제공자를 찾아야 합니다. 견습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제공자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.

질문: 견습생으로 등록 시 드는 비용이 있나요?

답변: 위원회는 견습 면허 발급 수수료 \$25.00를 요구합니다. 프로그램 제공자가 부과하는 추가 요금도 있습니다.

질문: 어떤 종류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?

답변: 위원회는 견습 프로그램 참여 전 지불해야 할 잠재적 비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비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. 비용에는 프로그램 제공자를 통한 등록, 키트 및 교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질문: 매니큐어사 또는 피부미용사 견습 프로그램도 있나요?

답변: 없습니다. 현재 견습 프로그램은 이발사, 미용전문가 및 전기분해요법 기술사 견습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매니큐어사 또는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미용 교육 시설에 제공되는 코스를 문의해 보십시오.

질문: 현재 위원회에서 승인한 이·미용 교육 시설에 다니고 있으며 견습생이 되고 싶을 경우 견습 프로그램의 필수 이수 시간에 수업 시간을 포함할 수 있나요?

답변: 불가능합니다. 위원회가 승인한 이·미용 교육 시설에서 취득한 이수 시간 및 실습 시간은 견습 프로그램의 필수 이수 시간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.

질문: 관련 교육 시간(RTH)은 3,200시간의 OJT(실무 교육) 시간에 포함되나요?

답변: 아닙니다. 관련 교육 시간(RTH)은 3,200시간의 OJT(실무 교육)과 더불어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. RTH 시간은 프로그램 제공자가 강의실에서 제공하는 수업으로, 프로그램 제공자는 캘리포니아주의 보강 및 안전 법규와 커리큘럼에 포함된 다른 주제를 설명합니다.

질문: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,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답변: 견습생을 비롯하여 면허가 교부된 모든 개인은 시설에서 근무 중 최신이며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(사진 포함)을 소지해야 합니다.. 허용되는 신분증 형식은 사진이 부착된

운전면허증(모든 주), 주 신분증(주 차량관리국에서 발행 - 모든 주), 미군 신분증, 유효한 여권(유효한 출입국 기록 양식 I-94이 있는 유효한 외국 여권 또는 유효한 외국 여권의 I-551 스탬프가 찍혀 처리된 경우), 미국 이민 및 귀화 발급 신분증 또는 미국 시민권 증명서.

질문: 견습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데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한가요?

답변: 위원회는 모든 지원자에게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(SSN) 또는 유효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(ITIN)를 요구합니다.

질문: 견습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을 상대로 근무할 수 있나요?

답변. 그렇습니다. 단, 고객을 상대로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면허에 명시된 인가 시설에서 지정된 강사의 직접적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.

질문: 제가 선택한 강사는 강사가 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?

답변: 불가능합니다. 현재 위원회에서 발급한 이발사, 미용전문가 또는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. 강사는 인가 시설의 소유주 또는 직원일 수 있으며, 위원회 발급 면허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. 강사는 견습생이 선택한 교육 과정(즉, 동일한 실습 부문)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.

질문: 강사가 아프거나 휴직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답변: 위원회는 각 견습생이 승인된 강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만 근무할 것을 요구합니다. 강사가 며칠 정도 병가를 내는 경우 강사 부재 시 견습생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. 강사가 장기 휴직을 요하는 경우 다른 강사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기록에 다른 강사를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견습생은 강사 여러 명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강사 한 명은 견습생 2명의 강사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. 기록에 강사를 추가하려면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.

질문: 견습생으로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휴직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답변: 견습생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혹은 장기간 중단하여 필수 커리큘럼(OJT 및 RTH)을 면허 유효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 프로그램 제공자는 Discontinuance Certificate(중단 증명서)를 작성해야 합니다. 작성하여 서명된 양식은 견습생 면허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수한 OJT 시간 및 실습, RTH, 견습 사전 교육 기록은 3년간 보존되므로 재등록을 결정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년 후 OJT 및 RTH 시간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.

질문: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2년 동안 견습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?

답변: 견습 관련 법규에 따라 24개월 견습 프로그램의 견습생은 견습 이수를 위해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8조 224절 (e)항에 명시된 24개월을 채워야 합니다.

지역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는 직무 및 관련 보충 교육 프로그램의 기술을 숙달하는 데 비범한 역량과 발전을 보이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개별 견습생의 견습 기간을 12.5(12 1/2)%보다 낮은 비율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24개월 프로그램의 12.5%는 3개월입니다. 24개월 프로그램에서 3개월을 빼면 견습 프로그램 필수 이수 기간은 21개월입니다.

질문: 21개월 안에 요구 사항을 이수하면 견습생 면허 만료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?

답변: 그렇습니다. 면허가 유효하며, 강사의 감독하에 있는 한 근무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.

질문: 면허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?

답변: 아닙니다. 면허가 만료되면 근무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견습생 면허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.